

감사인 지정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최 성 호**

박 경 란***

최근 기업의 회계 투명성과 신뢰성을 향상시키고자 외감법이 개정되었다. 특히 외감법 개정을 통해 감사인 지정이 크게 확대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감사인 지정제도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감사인 지정제에 대한 몇 가지 개선방안을 논의하였다.

첫째, 과거 6년 이내에 금융감독원의 감리를 받은 결과, 회계처리기준 위반이 없는 기업은 주기적 지정에서 제외하는 예외사항을 두었다. 하지만 테마감리는 해당 회계이슈에 대해서만 감리를 할 뿐 전체 재무제표에 대한 감리를 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테마감리 대상 기업은 주기적 지정에 포함시키는 것이 제도 시행목적에 더 부합하다.

둘째, 코넥스시장의 상장예정기업과 금융감독원이 상시감독하고 있는 금융기관은 감사인 지정에서 제외시키고 있다. 하지만 외부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의 상장예정기업은 감사인을 지정하고 있어 코넥스시장의 상장예정기업만 감사인 직권지정에서 제외할 이유가 없다. 또한 금융감독원은 금융기관에 대해서 영업 건 전성을 감독할 뿐, 기업의 전반적인 회계처리를 감독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이들 사유에 대한 감사인 직권지정 예외 조항을 제외시킬 필요가 있다.

셋째, 감사인 등록제 도입으로 인해 중·소형 회계법인은 등록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조직변경 및 합병 등의 변화가 예상된다. 하지만 회계법인의 대형화가 감사품질을 제고시킬지는 미지수이다. 따라서 회계법인 품질관리 수준을 고려하여 감사인 등록제를 단계별로 시행하는 것도 좋은 방안일 것이다. 또한 중·대형 회계법인의 감사품질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이 신 외감법에 빠져 있다. 대우조선해양, KT 등 대규모 분식회계 사건의 외부감사를 대형 회계법인이 수행한 만큼 대형 회계법인의 감사품질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

주제어: 외감법, 감사인 지정, 직권지정, 주기적 지정

1. 서론

최근 조선 및 건설업 등 수주산업의 일부 기업에서 장기간의 건설계약을 통해 수익으로 인식해오다가 일시에 비용으로 전환하여 대규모 손실을 보고하는 사건으로 인해 건설계약 회계 정보의 신뢰성에 의혹이 제기되었다. 이에 규제기관은 수주산업 회계 투명성 개선방안을 마련하면서 분식회계 의혹을 예

방하고 회계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금융감독원은 2016년에 89개 기업이 회계처리 위반으로 적발돼 제재를 받았다고 발표하였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에서 발표한 우리나라의 2017년 회계 투명성은 조사대상 국가 중 최하위인 63위이며, 세계경제포럼(WEF)에서 발표한 회계감사 및 공시기준의 강도는 62위로 세계 11위 경제력에 비해 회계 투명성은 상당히 낮다. 더욱

논문접수일: 2019. 01. 07. 1차 수정본 접수일: 2019. 03. 26. 게재확정일: 2019. 04. 29.

* 본 논문은 2018년도 조선대학교 학술연구비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습니다.

** 조선대학교 경상대학 경영학부 조교수(csh@chosun.ac.kr), 제1저자

*** 전남대학교 법과대학 박사과정(poetran@hanmail.net), 교신저자

이 회계 불투명성은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뽑히고 있다. 이에 금융위원회를 비롯한 유관기관은 특정 산업이나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한 부분적인 제도 개선만으로는 전반적인 회계 투명성과 신뢰성을 향상시킬 수 없다는 문제의식에 공감하여 2016년 말 회계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2017년 초 이해관계자와 함께 공청회 및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에 2017년 4월 「회계 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한 종합대책」을 최종 확정하였다(금융위원회, 2017). 이후 입법과정에서 정부안이 일부 수정되거나 조정되는 과정을 거쳐 2017년 9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었다. 2018년 10월에는 외감법 시행령과 외감규정 등이 개정되었다.¹⁾

신 외감법은 외감대상과 감사인 지정제도의 확대 적용, 감사인 등록제 시행, 감리제도의 개선, 제재양정기준 마련 등 5개 분야에서 개정이 이루어졌다. 특히 감사인의 독립성과 외부감사의 신뢰성을 높여 이해관계자를 보호하기 위해 규제기관이 외부 감사인을 지정하는 감사인 지정제도를 확대한 것이 가장 큰 개정사항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신 외감법의 감사인 지정제도와 관련된 사항들에 대해서 주요 논점별로 살펴보고 개선방안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이를 통해 이해관계자들에게 감사인 지정제도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정책기관에서도 향후 신 외감법을 개정할 때 참고자료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다. 제2장에서는 감사인 지정제도를 포함한 외부감사제도에 대해서 살펴보았으며, 제3장에서는 감사인 지정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고찰하였다. 그리고 제4장에서는 신 외

감법의 감사인 지정제도와 관련된 주요 논점별 개선방안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결론을 기술하였다.

II. 외부감사제도

2.1 외부감사제도

외부감사는 주식회사 및 유한회사의 회계처리와 외부 감사인의 회계감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이해관계인을 보호하고 기업의 건전한 경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이다(외감법 제1조). 따라서 주권상장법인, 다음 사업연도에 주권상장법인이 되려는 회사 그리고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 부채, 종업원 수 또는 매출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주식회사와 앞서 요건 이외에도 사원 수를 고려한 유한회사는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회사로부터 독립된 외부의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외감법 제4조). 외부감사 대상기업은 다음 <표 1>과 같다. 외감법에서는 기존 주식회사의 외부감사 선정기준에 회사의 규모, 재무상황과 관련성이 높은 매출액 요건을 추가하였으며, 회계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유한회사를 외부감사 대상에 포함하였다.²⁾ 이에 외감법의 명칭을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였다.

외감대상 기업의 변경 및 신설된 사항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신 외감법에서는 우회상장뿐

1) 2018년 1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외감법 및 하위 법령을 총칭하여 신 외감법이라 칭한다.

2) 회계감독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주식회사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유한회사도 감사인에 의한 외부감사를 받도록 하였다. 주식회사의 외부감사 기준인 자산총액 120억원 이상을 적용하게 되면 전체 유한회사 2만여 개 중 외감대상 유한회사는 2천여 개 정도이다(연합뉴스, 2017).

〈표 1〉 외부감사 대상기업

- 주권상장법인 및 해당 또는 다음 사업연도에 주권상장법인이 되려는 회사
- 우회상장이나 기업인수목적회사와의 합병상장이 인정되는 회사*
- 위 회사를 제외한 기업 중 다음의 사항 중 3개 이상 해당되는 회사는 제외3)*
 - ◆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120억원 미만인 회사
 - ◆ 직전 사업연도 말의 부채총액이 70억원 미만인 회사
 - ◆ 직전 사업연도 말의 매출액 100억 미만인 회사4)
 - ◆ 직전 사업연도 말의 종업원 수가 100명 미만인 회사5)
 - ◆ 직전 사업연도 말의 사원 수가 50명 미만인 유한회사6)
-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500억원 이상이거나 매출액이 500억원 이상인 회사*

1) 출처: 외감법 제4조: 외감법 시행령 제5조.
 2) 회사는 외감대상이 되는 주식회사와 유한회사를 말함(외감법 제2조).
 3) 최초 설립등기를 한 회사는 제외.
 4) 직전 사업연도가 1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기간을 12개월로 환산.
 5) 파견근로자는 제외.
 6) 유한회사에 한정됨. 주식회사는 사원 수 조건을 적용할 수 없음.
 * 신 외감법에 외부감사 대상기업 및 선정기준 변경 및 신설된 항목.

만 아니라 기업인수목적회사와의 합병상장이 인정되는 회사를 외감대상에 포함하여 대상을 좀 더 명확히 하였다. 둘째, 비상장 소기업 회사에 대해서 매출액 조건을 추가하였다. 자산, 부채, 매출액, 종업원 수 등 4가지 항목 중 3가지 조건에 해당하는 주식회사는 비상장 소기업으로 분류되어 외감대상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유한회사는 기준을 좀 더 차별화하기 위해 사원 수 요건을 추가하여 자산, 부채, 매출액, 종업원 수, 사원 수 등 5가지 항목 중 3가지 조건에 해당되면 모두 비상장 소기업 유한회사로 분류되어 외감대상에서 제외된다. 단, 관련 법령을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외감법이 시행되는 2019년 11월 1일 이후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변경하는 기업은 5년간 주식회사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 셋째,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이 500억원 이상인 회사는 비상장 소규모 기업으로 인정하지 않고 대규모 기업으로 분류하여 외부감사 의무를 부과하였다.

상법 및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상 감사위원회 의무설치 회사는 사업연도 개시일 이전에 감

사인을 선임하여야 하며, 직전 사업연도에 회계감사를 받지 않은 회사는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개월 이내에 감사인을 선임하면 된다. 하지만 이외의 일반적인 회사는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45일 이내에 감사인을 선임해야 된다.³⁾ 특히 기존에는 외부 감사인을 회사가 선정한 감사인을 감사의 승인을 얻어 선임하였으나 신 외감법에서는 감사 및 감사위원회가 선정한 감사인을 선임하도록 개정하였으며, 외부 감사인 선정시 직접 후보를 평가하여 선정할 뿐만 아니라 감사보수, 감사시간 등 사후평가를 수행해야 한다. 그리고 주권상장법인뿐만 아니라 대형 비상장주식회사와 금융회사는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동일 감사인으로 선임해야 한다(외감법 제10조).

더욱이 상장법인의 외부감사 품질을 제고하기 위해 일정 요건을 갖추어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회계법인만이 외부감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감사인 등록제를 도입하였다. 감사인 등록제의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인회계사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회계법인 이어야 한다. 둘째, 감사품질을 확보

3) 감사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은 주권상장법인, 대형 비상장법인과 금융회사는 감사인선임위원회가 승인해야 한다.

하기 위해 주 사무소에 40명 이상의 등록 공인회계사가 소속되어야 한다.⁴⁾ 셋째, 통합관리를 위해 조직을 비롯하여 내부규정 및 전산시스템의 체계 구축 등 물적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넷째, 감사업무의 독립성 준수여부 점검 및 감사투입시간 측정 등 감사품질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감사보고서의 심리체계 및 보상체계도 갖추어야 한다(외감법 제9조의 2).

그러나 아래 <표 2>의 조건에 해당하는 회사는 외부감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표 2>는 외부감사 면제 사유를 정리한 것이다.

2.2 감사인 지정제도

우리나라의 감사인 선임제도는 원칙적으로 감사대상회사가 감사인을 선임할 수 있는 자유수임제이다. 다만, 감사인의 독립성과 외부감사의 신뢰성을 높여 이해관계자를 보호하기 위해 자유선임권을 제

한하고 증권선물위원회(금융감독원에 위탁)가 외부 감사인을 지정하는 감사인 지정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감사인 지정제도는 자율적인 감사시장에 규제기관이 직접 개입함으로써 회계 정보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된다. 다음 <표 3>은 감사인 지정 사유를 정리한 것이다.

신 외감법은 감사인 지정 사유를 확대하였다. 첫째, 재무제표 작성의무 위반기업, 최근 3년간 2번 이상의 최대 주주를 변경하거나 3번 이상의 대표이사를 교체한 기업, 주채권은행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의 요청이 있는 기업, 표준감사시간에 현저히 미달하는 기업 등을 감사인 지정 사유로 추가하였다. 둘째, 기존의 주권상장법인의 재무기준 요건을 강화하였다(외감법 제11조). 이러한 감사인 직권지정 사유의 확대는 감사인의 교섭력을 강화하고 감사인의 독립성을 확보하여 감사품질을 제고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반면, 지정 사유의 확대에 의해 분식회계의 범의가 없는 회사도 직권지정

<표 2> 외부감사 면제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받은 회사 중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회사 • 「지방자치단체 출자 및 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공기업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목적회사 • 「기업구조조정 투자회사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 투자회사 •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 전문회사 • 「민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결제원으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고 그 처분의 효력이 계속중인 회사²⁾ • 「상호저축은행법」 및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금융위원회가 관리인을 선임한 회사 • 해산·청산·파산 사실이登記되거나 1년 이상 휴업 중인 회사 • 「상법」에 따라 합병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로서 해당 사업연도 내에 소멸될 회사 • 국세청에 휴업 또는 폐업을 신고한 회사 • 연락 두절 등 사회의 통념에 비추어 사실상 폐업한 회사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로서 법령 및 행정규칙 등에 따라 회사에 외부 감사인으로부터 회계감사를 받을 것을 요구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회사

1) 출처: 외감법 제4조; 외감법 시행령 제5조; 외감규정 제2조.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절차의 개시가 결정된 회사는 제외.

4) 주 사무소에 등록된 수습을 이수한 공인회계사가 40인 이상이어야 감사인 등록이 가능한데, 회계법인의 83% 이상이 서울에 소재하고 있어 합병이 어려우며, 지방 회계법인의 소속 회계사수가 20인 이하인 점을 반영하여 지방 회계법인(주사무소의 소재지가 서울, 인천, 경기 외 지역)은 공인회계사가 20명 이상이면 등록할 수 있다(외감규정 별표 1, 금융위원회, 2019).

〈표 3〉 감사인 지정 사유

- 회사가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감사인 선임기간 내에 증권선물위원회에 감사인 지정을 요청한 회사
- 감사(위원회) 및 감사인선임위원회에서 선임한 감사인을 감사인 선임기간 내 감사인을 선임하지 않은 회사
- 감사인 교체 사유가 부당하다고 인정되거나 선임절차를 위반하여 감사인을 선임한 회사
- 해당 사업연도 또는 다음 사업연도 중에 우회상장, 기업인수목적회사와의 합병상장을 포함한 주권상장예정기업
- 기업의 재무제표 대리 작성 금지행위를 위반하여 기업의 재무제표를 감사인이 대신하여 작성하거나 재무제표 작성과 관련된 회계처리에 대한 자문을 요구하거나 받은 회사*
- 감사인의 감사시간이 표준감사시간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이라고 증권선물위원회가 인정한 회사*
- 「공인회계사법」 상의 감사인과 회계법인의 직무제한 규정(제21조, 제33조)을 위반하여 감사계약의 해지 또는 감사인의 해임을 하지 아니하거나 새로운 감사인을 선임하지 않은 회사
- 감사계약 체결 후 합병, 분할 또는 사업의 양도 및 양수로 주요 사업부문의 성격이나 회사의 규모가 현저히 달라졌으나 감사보수에 대한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회사
- 감사의견과 관련하여 감사인이 회사의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자, 채권자나 주주로부터 부당한 요구나 압력을 받아 감사계약 해지권을 행사한 회사
-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주채권은행 또는 수탁자 책임을 효과적으로 이행한다고 증권선물위원회가 인정한 기관투자자가 증권선물위원회에 감사인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의 회사*
- 주채권은행이 회사의 동의를 얻어 감사인 지정을 요청한 경우
- 주권상장법인 중 3개 사업연도 연속 영업이익 혹은 연속 영업현금흐름이 0보다 작거나 연속 이자보상배율이 1미만인 회사*
- 주권상장법인 중 직전 사업연도의 부채비율이 200%를 초과 혹은 업종 평균의 1.5배를 초과하거나 이자보상배율이 1미만인 회사
- 증권선물위원회 감리결과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한 사실이 확인된 회사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주권상장법인
- 투자주의 환기종목으로 지정된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 일정 금액 이상의 횡령·배임 혐의로 소속 임직원을 고소하거나 소속 임직원에게에 대한 공소가 제기된 주권상장법인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의 개시가 결정된 회사가 법원의 허가 등을 얻어 선임한 감사인을 증권선물위원회에 지정 요청한 회사
- 직전 사업연도를 포함하여 과거 3년간 최대 주주의 변경이 2회 이상 발생하거나 대표이사의 교체가 3회 이상 발생한 주권상장법인*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위반 등으로 공정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회사
-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감사인 지정을 요청한 경우의 회사
- 공정한 감사를 통해 회계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기업이 자율적으로 감사인 지정을 요청한 회사2)
- 연속하는 6개 사업연도에 대하여 감사인을 자율선임한 주권상장법인(비상장주식회사 및 유한회사는 자산총액이 1천억 원 이상이고,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지배주주 등이 50%이상인 소유와 경영 미분리 기업)3)

1) 출처: 외감법 제11조; 외감법 시행령 제14조, 제17조; 외감규정 제15조.

2) 자율지정 신청기업은 감사계약 기간 중에도 감사인 변경이 허용되며, 당해 연도 감리대상에서 제외 (단, 검찰 등의 조사의뢰, 제보 등 분식회계 혐의가 드러난 경우에는 감리대상에 포함).

3) 주기적 지정제로 인한 감사인 지정은 2020년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적용.

* 신 외감법에 추가된 신규 지정 사유이거나 변경된 지정사유.

에 포함될 수 있다는 부정적 측면도 있다.

그리고 외감법은 2020년부터 주기적 지정제를 도입함에 따라 직전 사업연도를 포함하여 6개 사업연도 동안 감사인을 자유선임한 기업은 연속되는 3개 사업연도에 대해서 감사인을 지정하도록 하였다.⁵⁾

2017년 말 감사인 지정 현황을 살펴보면, 상장예정(172개사), 기한 내 감사인 미선임(130개사), 부채비율 등 재무기준 요건 해당(72개사), 감리결과 감사인 지정조치(67개사), 내부회계관리제도 미비(59개사), 관리종목 편입(27개사), 소유와 경영의 미분리(6개사), 횡령 및 배임 발생(5개사), 상호저축법에 의한 지정요청(5개사), 감사인 부당교체(2개사), 회사요청(1개사) 순으로 지정 기업이 많았다. 전체 외감 대상 기업 29,263개 기업 중 감사인 지정기업은 546개 기업으로 1.9%를 차지하고 있다. 상장사 기준으로는 7.8%(170개사 /2,167개사)가 감사인 지정을 받았다. 2016년 감사인 지정 현황도 기업수의 차이가 있을 뿐 2017년과 거의 차이가 없다(금융감독원, 2018).

감사인 지정방법은 회사 군별로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이 높은 회사부터 감사인 점수가 높은 감사인을 지정한다.⁶⁾ 회사는 자산총계의 크기에 따라 크게 5개의 군으로 구분한다. 따라서 감사인도 특성을 고려하여 크게 5개의 군으로 구분한다. 감사인 지정시 감사인의 고려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직전 사업연도에 감사인 지정을 받은 기업이 다시 지정대상이 된 경우, 최초 지정 사업연도를 포함하여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까지 동일 감사인을 지정감사인으로 우선 지정한다. 둘째, 감사제한 조치를 받고 있는 감사인을 선임하였거나, 규정을 위반하여 감사인을 선임하였을 경우에는 회사가 선임한 감사인은 당해 기업의 감사인으로 지정하지 않는다. 셋째, 지배·종속 회사가 동일 감사인을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 감사인의 독립성 저해요소가 있는 경우, 감리결과 등을 감사인 지정시 고려한다(외감규정 제15조). 마지막으로 회계법인의 주 사무소에 소속된 공인회계사수, 감사업무 매출액, 품질관리 담당자 비중, 손해배상능력 및 전년도 감사대상 상장사 수 등을 고려한다.⁷⁾

- 5) 최초 정부안은 선택 지정제를 도입하고자 하였다. 선택 지정제는 상장회사가 자사의 감사인이 되길 희망하는 3개의 회계법인을 제시하면 증권선물위원회가 그 중 하나의 회계법인을 지정하는 제도이다. 6년 자유선임 후 3년 선택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선택 지정제의 대상은 경제적 영향이 큰 기업, 비교적 분식회계에 취약한 요인이 있는 기업 및 회계 투명성 유의 업종에 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선택 지정제의 도입은 대형 회계법인의 시장점유율을 높여 중·소형 회계법인의 진입장벽이 더 높아진다는 문제점이 있다. 그리고 일각에서 논의되었던 완전 지정제는 자유수입 자체를 없애고 모든 외부감사 대상기업을 증권선물위원회가 계속 지정하는 것으로 기업의 부담이 가중되며, 외국인 투자자들이 부정적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정부와 국회는 선택 지정제와 완전 지정제의 절충안인 주기적 지정제를 도입하였다.
- 6) 지정대상 회사는 다음과 같이 5개 군으로 구분한다(외감규정 별표 4).

구분	기준
가군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이 기업
나군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이 1조원 이상이고 5조원 미만인 기업
다군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이 4천억원 이상이고 1조원 미만인 기업
라군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이 1천억원 이상이고 4천억원 미만인 기업
마군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이 1천억원 미만인 기업

- 7) 감사인 특성에 따른 감사인 지정 요건(외감규정 별표 4).

구분	기준					해당 회계법인
	공인회계사수*	감사업무 매출액	품질관리 업무 담당자 비중	손해배상능력	전년도 감사대상 상장사 수	
가군	600인 이상	500억원 이상	감사인 등록요건 중	200억원 이상	100사 이상	4개 충족
나군	120인 이상	120억원 이상	품질관리 업무 담당자	60억원 이상	30사 이상	4개 충족
다군	60인 이상	40억원 이상	비중의 120% 이상**	20억원 이상	10사 이상	4개 충족
라군	30인 이상	15억원 이상	2명 이상	10억원 이상	5사 이상	3개 충족
마군	감사인 지정이 가능한 그 밖의 회계법인					

규제기관은 감사인 점수를 바탕으로 감사인 지정 점수를 산정하고, 감사인 지정점수 순서에 따라 각 군에 속해있는 자산규모가 큰 회사에 감사인을 지정한다.⁸⁾⁹⁾ 감사인 점수는 해당 회계법인의 전년도 4월 1일부터 당해 연도 3월 31일까지로 하며, 기본적으로 회계법인의 소속공인회계사별 경력점수를 합하여 산정한다.¹⁰⁾ 또한 직전 사업연도 회계법인의 전체 매출액 중 회계감사업무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50% 미만인 경우에는 감사인 점수 중 일부를 차감한다(외감규정 별표 3).¹¹⁾ 그리고 감사인 지정 점수는 감사인 점수를 지정받은 회사 수에 1을 더한 값으로 나누어 계산한다.¹²⁾

하지만 감사인 지정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지정에서 제외되는 기업들이 있다. <표 4>는 감사인 지정

면제 사유를 정리한 것이다. 대부분의 감사인 지정 면제 사유는 크게 3가지로 구분이 된다. 첫째, 상장 예정기업 중 시장 활성화를 위해 감사인 지정을 면제해주는 경우이다. 하지만 상장 유지기간 동안은 감사인 지정 사유에 해당하면 감사인 지정을 받아야 된다. 둘째, 금융기업은 규제기관으로부터 감독을 받고 있다고 판단하여 감사인 지정을 면제하고 있다. 셋째, 이해관계자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인 감사인 지정 도입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투자주의 환기종목 및 관리종목 기업은 감사인 지정을 면제하고 있다.

외감법은 주기적 지정제를 2020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하지만 ① 증권선물위원회에 감리를 신청한 사업연도를 포함한 과거 3개 사업연도의 내부회계관

* 실무수습을 이수한 공인회계사.

** 감사인 등록요건 중 품질관리 업무 담당자(담당임원 제외) 비중 요건. 공인회계사수 20명~70명인 회계법인은 품질관리 업무 담당자가 1명 이상. 공인회계사수 71명~100명인 회계법인은 품질관리 업무 담당자가 2명 이상. 공인회계사수 101명~300명인 회계법인은 2명에 100명을 초과한 인원의 2%를 합한 수 이상. 공인회계사수 301명 이상인 회계법인은 6명에 300명을 초과한 인원의 1%를 합한 수 이상.

*** 신 외감법에서는 실무수습 이후 회계처리 또는 외부감사를 수행한 경력기간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였다. 대표이사는 10년 이상, 품질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이사는 7년 이상, 품질관리 업무 담당자는 5년 이상의 경력을 충족해야 한다.

8) 회사 '가'군에 속한 회사의 회계법인은 회계법인 '가'군에 속한 회계법인 중에서 감사인 지정점수가 높은 회계법인부터 순서대로 지정한다. 회사 '나'군에 속한 회사의 회계법인은 회계법인 '가'군 또는 '나'군에 속한 회계법인 중에서 감사인 지정점수가 높은 회계법인부터 순서대로 지정한다. 하지만 회사가 회계법인 '가'군에 속하는 회계법인을 지정해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가'군에 속하는 회계법인에 한해 감사인을 지정한다.

이하 '다'군, '라'군, '마'군에 속한 회사도 동일한 원리로 감사인을 지정한다.

9) 회계법인이 증권선물위원회 또는 한국공인회계사회로부터 외감법 제29조에 따른 조치를 받았을 경우 지정제외점수를 부과한다. 지정제외점수가 30점 이상인 경우에는 감사인으로 지정하지 않을 수 있다. 매년 8월 31일을 기준으로 직전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이 5조 원 이상인 경우 누적지정제외점수 90점당, 4천억원 이상이고 5조원 미만인 경우 누적지정제외점수 60점당, 4천억원 미만인 경우 누적지정제외점수 30점당 1개 회사를 감사인 지정에서 제외한다(외감규정 별표 4).

	가중치 최대	I	II	III	IV	V	감경시 최소
고의	300	250	200	150	100	60	40
중과실	150	100	60	40	30	20	10
과실	40	30	20	10	-	-	-

10) 경력점수는 공인회계사의 경력기간(실무수습기간 제외)을 고려하여 산정된다. 경력점수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경력 15년 이상인 공인회계사수 × 120) + (경력 10년 이상인 공인회계사수 × 115) + (경력 6년 이상인 공인회계사수 × 110) + (경력 2년 이상인 공인회계사수 × 100) + (경력 2년 미만인 공인회계사수 × 80) + (수습회계사수 × 40).

11) 전체 회계법인의 매출액 중 회계감사업무 매출비중이 40%이상 50%미만이면 감사인 점수 중 5%를 차감한다. 그리고 감사매출비중이 30%이상 40%미만이면 감사인지정 점수 10%를, 20%이상 30%미만이면 감사인지정 점수 15%를, 10%이상 20%미만이면 감사인지정 점수 20%를, 10%미만이면 감사인지정 점수를 25% 차감한다.

12) 감사인지정 점수 = 감사인 점수 / (1+감사인으로 지정 받은 회사 수)

감사인으로 지정 받은 회사 수는 해당연도 산정기준일부터 다음 해 산정기준일까지 감사인으로 지정을 받은 회사 수에 지정받은 회사의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별로 가중치를 곱하여 산출한다.

감사인 지정받은 회사의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이면 감사인으로 지정을 받은 회사수에 3배의 가중치를, 4천억원 이상부터 5조원 미만까지는 2배의 가중치를, 4천억원 미만이면 1배의 가중치를 적용한다.

〈표 4〉 감사인 지정 면제 사유

- 코넥스시장 상장예정기업
- 이전상장법인(코스닥시장에서 유가증권시장으로 이전, 유가증권시장에서 코스닥시장으로 이전)
- 주권상장법인이 되려는 기업인수목적회사
- 금융회사
-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검토 또는 감사 결과 중요한 취약점의 발견 또는 중요한 범위 제한이 있거나 감사의 견이 표명되지 않아 투자주의 환기종목으로 지정된 코스닥상장법인
- 주식분산 기준(주주 수, 상장주식 수 등), 주식거래량 기준, 시가총액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관리종목 지정 기업
- 증권선물위원회 감리결과 경미한 위반을 지적받은 기업
- 과거 6년 이내에 증권선물위원회 감리 결과 회계처리기준 위반이 발견되지 않은 회사²⁾
- 회계 신뢰성이 양호한 기업(과거 6년 이내에 요건 ①증권선물위원회에 감리를 신청한 사업연도를 포함한 과거 3개 사업연도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감사)의견이 적정, ②지정기준일 이후 차기 3개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교체하기로 확약, ③지정기준일로부터 과거 6년 이내에 감리를 받지 않은 회사)을 충족한 기업이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감리를 받은 결과, 회계처리기준 위반이 발견되지 않은 회사²⁾

1) 출처: 외감법 제11조; 외감법 시행령 제15조; 외감규정 제14조, 제15조.

2) 신 외감법에 추가된 주기적 지정제의 면제 사유(외감법 제11조 제3항; 외감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리제도 검토(감사)의견이 적정인 기업, ② 지정기준일 이후 차기 3개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교체하기로 확약한 기업, ③ 지정기준일로부터 과거 6년 이내에 감리를 받지 않은 회사 등 3가지 요건을 충족한 기업이 지정기준일 1년 이전에 감리를 신청해서 회계처리기준 위반이 발견되지 않은 회사는 주기적 지정에서 제외된다. 이는 공적 기구를 통해 분식회계의 의심되어 감리를 받았으나 회계처리기준 위반이 발견되지 않았기에 회계 신뢰성이 일정 부분 확보되었다고 판단한 것이다. 즉, 회계처리의 신뢰성이 양호하다고 판단하여 주기적 지정에서 제외된다(외감법 제11조, 시행령 제15조).¹³⁾

III. 선행연구검토

자본시장에서 한정된 경제적 자원을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해서는 회계 정보의 신뢰성과 투명성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효과적인 감사와 높은 감사품질이 요구된다(권수영 외, 2013). 또한 감사품질이 향상되면 재무보고의 신뢰성이 증가하여 궁극적으로 재무보고의 질이 향상된다(Kim & Yi, 2009; Defond & Zhang, 2014).

DeAngelo(1981)는 감사품질을 감사인이 피감사 기업의 회계시스템에서 위반사항을 발견하고, 이를

13) 금융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외감법 개정 관련 정부안에는 회계처리의 투명성이 양호한 회사를 크게 3가지 회사로 명시하고 있었다. 첫째, 외국의 증권거래소에 유가증권을 상장한 회사는 전 세계적으로 회계품질이 인정된 회계법인에게 감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주기적 지정에서 예외사항으로 인정해도 무방할 것으로 보았다. 둘째, 금융감독원의 상시감독을 받고 있는 금융회사도 예외사항으로 분류하였다. 셋째, 상법에 따라서 감사위원회를 설치하고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를 다른 이사와 분리 선출한 회사이면서,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리운영 실적이 우수하다고 증권선물위원회가 인정한 회사이다. 하지만 금융감독원의 상시감독을 받고 있는 금융회사와 외국의 증권거래소에 유가증권을 상장한 회사를 주기적 지정에서 제외하기로 한 정부안은 폐기되어 시행령에 포함하지 않기로 하였다. 그리고 상법에 따른 감사위원회를 설치하고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를 다른 이사와 분리하여 선임하고, 내부회계관리제도 실적이 양호한 기업은 회계처리 관련 기업지배구조가 우수하다고 판단하여 주기적 지정에서 제외하자는 논의가 있었다. 하지만 국회에서 계류중인 감사위원의 분리선출 조항이 포함된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일정 규모 이상의 주권상장법인은 의무적으로 감사위원회를 설치해야 하며, 감사위원을 다른 이사와 분리선출 해야 된다. 따라서 일정 규모 이상인 기업들은 결국 내부회계관리제도만 양호하면 주기적 지정에서 제외될 수 있다. 이에 국회에서는 해당 예외 조항을 포함하게 되면 주기적 지정제의 도입 취지가 희석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신 외감법에는 포함시키지 않았다.

보고할 결합 확률로 정의하였다. 즉, 감사인의 효율성과 독립성에 의해 감사품질은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많은 선행연구들은 감사인의 효율성과 독립성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과 이로 인해 나타난 효과를 분석하였다.¹⁴⁾

더욱이 우리나라는 1990년부터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정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업에 대해 독립적이고 공정한 외부감사가 이루어지도록 자유선택 임권을 제한하고 증권선물위원회가 외부 감사인을 지정하는 감사인 지정제도를 채택하고 있다(최성호 외, 2015). 감사인이 지정되면 지정기간 동안 감사인에 대한 교섭압력이 없고, 계속감사로부터 기대되는 경제적 준지대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향후 감사계약에 대한 문제를 제거할 수 있어 감사인의 독립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권수영 외, 2004).

감사인 지정제도와 관련된 선행연구는 크게 감사인 지정제도의 시행으로 인해 감사품질이 향상되었는지에 대한 연구, 감사인 지정에 대한 시장 반응을 분석한 연구, 감사인 지정이 감사보수 및 감사시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와 감사인 지정제도의 정책제안 연구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감사인 지정제도 시행으로 인해 감사품질이 향상되었는지를 검증한 선행연구들은 대체로 감사인 지정제도 시행으로 인해 감사인의 독립성이 향상되어 감사품질이 제고되었다는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특히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은 감사품질의 대응치로 이익조정을 이용하였으며, 그중에서도 재량적 발생액(DA)을 이용하여 분석한 연구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그 외 몇몇 연구들은 보수주의(하순금 외, 2015)와 회계이익과 과세소득 간 차이(book tax difference: BTD)(김은·신용준, 2010)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선행연구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감사인 지정 전 기간에 비해 감사인 지정기간이 이익조정 정도가 더

낮았으며(Kim & Yi, 2009; 박한순, 1996; 권수영 외, 2004; 안영균·이재경, 2004; 강선민·황인태, 2007), 더 보수적인 회계처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하순금 외, 2015). 또한 감사인 지정기간에 비해 감사인 지정 이후 기간에는 이익을 상향조정 하였으며(강선민·황인태, 2007), 덜 보수적인 회계처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나(하순금 외, 2015) 감사인 지정제도의 시행으로 인해 감사품질이 제고되었다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특히 감사위험이 높은 사유로 감사인이 지정된 기업은 감사위험이 낮은 사유로 감사인이 지정된 기업보다 재량적 발생액이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나 감사인 지정제도의 효과성을 실증분석을 통해 제시하였다(권수영 외, 2004). 하지만 김진희·정재욱(2009)과 최성호 외(2015)는 감사인 지정제 시행 기간의 재량적 발생액이 자유수입제 시행 기간보다 더 크다는 결과를 보고함에 따라 기존의 감사인 지정제도의 연구와는 상반된 결과를 제시하였다.

둘째, 감사인 지정을 받은 기업에 대해서 외부 정보이용자들이 긍정적으로 인지하고 있다는 연구와 부정적으로 인지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혼재되어 있다. 이세용(2009)과 이세용 외(2009)는 감사인 지정기업에 대해서 자본시장 참여자들이 대체로 긍정적으로 인지하고 있다는 결과를 보고하였다. 특히 이세용(2009)은 소유와 경영의 미분리 사유로 감사인 지정을 받은 기업일수록 투자자들은 긍정적으로 인지하여 투자의사결정에 반영하고 있는 반면, 부채과다비율 사유로 감사인 지정을 받은 기업일수록 투자자들은 부정적으로 인지하였다. 이는 감사위험이 높은 사유로 감사인이 지정된 기업에 대해서는 투자자들이 부정적으로 인지하고 있는 반면, 감사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 사유로 감사인이 지정된 기업에 대해서는 투자자들이 투자의사결정시 긍정적으로 반영

14) 감사품질은 Defond & Zhang(2014), 권수영 외(2013), 최아름 외(2014)의 연구를 참고하기 바란다.

하고 있다는 결과이다. 그리고 박재환·김진희(2007)와 김정옥(2014)도 감사인 지정을 받은 기업은 회계 정보의 신뢰성이 향상되어 감사인 지정을 받기 이전 기간에 비해 회계 정보의 가치관련성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주식수익률로 감사인 지정 기업에 대한 시장 반응을 분석한 이세용(2009)과 이세용 외(2009)의 연구 결과와 일맥상통한 결과이다. 채권시장 참여자들도 자본시장과 마찬가지로 감사인 지정을 받은 기업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인지하여 자유수입 기업에 비해 감사인 지정기업의 타인자본비용이 유의하게 더 낮았다(강민정·이명건, 2018). 하지만 관리종목 편입에 따른 지정에 대해서는 타인자본비용이 유의하게 낮아지지 않았다. 이는 채권시장 참여자들이 지정 사유에 따라 차별적으로 의사결정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셋째, 감사인 지정이 감사보수 및 감사시간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대부분의 선행연구는 감사인이 지정된 기업은 자유수입 계약으로 감사계약을 맺은 기업에 비해 감사시간이 더 많이 투입되었으며(신용준·김은, 2010), 감사보수도 유의하게 증가하였다(황인태·강선민, 2006; 신용준·김은, 2010; 황인태·강선민, 2014). 특히 신용준·김은(2010)은 감사인 지정기업의 감사보수와 감사시간이 모두 증가하여 감사인 지정기업에 대해 추가적인 감사노력을 투입하여 감사품질을 제고하고 있음을 실증적으로 제시한 반면, 황인태·강선민(2006, 2014)은 감사인 지정기업의 감사보수는 증가한 반면, 감사시간은 유의하게 증가하지 않아 감사인 지정대상기업을 확대하는 것이 회계 투명성을 제고하기 어렵다는 주장을 하였다.

마지막으로 황인태 외(2013)와 황인태·강선민(2014)은 감사인 지정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먼저, 황인태 외(2013)는 우리나라가 IFRS 도입으로 인해 연결채무제표가 주 재무제표가 됨에 따라 주 감사인의 역할 및 책임이 점차 확

대되고, 감사위험이 증가하는 환경 변화에 발맞추어 감사인 지정제도의 확대 적용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특히 저자들은 지배회사와 종속회사의 감사인을 동일시하기 위해 지배회사의 감사인이 지정된 경우 종속기업의 감사인을 변경 선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황인태·강선민(2014)은 2000년부터 2009년까지 감사인 지정현황을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지정 사유, 지정 방식, 지정감사인 유입 등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구체적으로 저자들은 소유와 경영이 미분리된 기업들의 감사인 선임 위원회가 감사인을 선임하면 감사인 지정에서 제외시켰으나, 감사인 선임위원회가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함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소유와 경영의 미분리 기업은 감사인을 지정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감사위험이 상대적으로 큰 지정기업에 non-big4가 배정되는 비율이 높으며, 감사위험이 상대적으로 적은 지정기업에 big4가 지정되는 비율이 높아 감사인 지정방식의 불합리를 완화시키기 위해 감사인 지정방식을 감사인 규모와 감사위험을 같이 고려하여 배정하는 방식을 제안하였다. 또한 감사인 지정기간이 끝난 첫 회계연도에 피감사기업은 감사인을 자유수입제에 따라 감사인을 선임할 수 있었다. 이에 저자들은 감사인 지정제도 도입목적인 감사인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정 감사기간이 끝나고 첫 자유수입제에서 지정 감사인이 선임되는 것을 금지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신 외감법 중 감사인 지정제도와 관련된 사항들에 대해서 주요 논점으로 살펴보았다. 특히 새로 적용될 주기적 지정제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선행연구와 다음과 같은 차이점을 갖는다.

첫째, 대부분의 선행연구는 감사인 지정제도의 시행으로 인해 감사품질이 제고되었는지를 살펴보았으며, 감사인 지정제도에 대해서 외부 이해관계자들은 어떻게 인지하고 있는지도 분석함으로써 제도의 효

과성을 분석하였다. 하지만 본 연구는 신 외감법에서 시행하는 감사인 직권지정의 확대적용 및 주기적 지정제에 대해서 살펴보고, 주요 사항별로 논의하였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둘째, 감사인 지정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해서 논의한 황인태 외(2013)와 황인태·강선민(2014)의 연구는 IFRS 도입 이후 감사환경의 변화를 고려하여 감사인 지정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하지만 본 연구는 신 외감법의 감사인 지정제도와 관련된 사항들에 대해서 주요 논점별로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IV. 감사인 지정제도 개선방안

4.1 신 외감법 개정사항

1982년 이후 감사인 선임방식을 배정제에서 자유수임제로 전환하면서 현재까지 외부 감사인은 기업과 감사인이 시장원리에 입각하여 감사계약을 체결하였다. 우리나라가 자유수임제를 선택한 이유는 시장에서 자유롭게 경쟁하면 감사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될 것이고, 이 과정에서 감사인의 경쟁력이 향상될 것이라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자유수임제 시행에 따른 기대효과가 사회에 발현되기 위해서는 감사인의 독립성이 기본적으로 전제되어야 한다. 그러나 자유수임제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감사인의 독립성 확보에 대한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1990년부터 감사인 지정제도를 시행하였다(이상복, 2018).

현재 외부 이해관계자를 보호하거나 회계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일부 기업에 한해 감사인 지정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2017년 기준 전체 외감대상 기

업 대비 감사인 지정기업은 1.9%(546개/29,263개)이며, 상장사를 기준으로 하여도 지정비율은 7.8%(170개/2,167개)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회계 투명성 지수 및 감사 적절성 지수는 매년 하락하거나 조사대상국 중 하위권에 머물러 있다. 특히 최근 들어 모뉴엘이나 대우조선해양 등 대규모 분식회계 사건들이 발생함에 따라 지엽적으로 정책을 보완하거나 제재를 강화하는 방식만으로는 회계 투명성을 개선하거나 감사 품질을 향상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따라서 감사품질을 제고함으로써 궁극적으로 회계 투명성을 개선하고자 2017년 10월 외감법이 개정되었고, 2018년 10월에는 외감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본격적으로 신 외감법이 2018년 11월부터 시행되었다. 신 외감법은 크게 5개 분야에서 개정이 이루어졌다.

첫째, 외감대상 기준을 조정하였다. 먼저, 의무대상 기업을 기존의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를 추가하였다. 또한 외감대상을 전체기업을 대상으로 하되, 공익적 효익보다는 비용이 더 크다고 판단하는 소규모 기업에 한해 외부감사를 제외하였다. 더욱이 경제적 실질을 반영하기 위해 소규모 기업의 판단 기준을 자산총계, 부채총계, 종업원 수에 추가적으로 매출액 기준을 포함하였다.¹⁵⁾

둘째, 외부감사 시장의 경쟁력을 '영업'에서 '감사 품질'로 전환하여 감독기관에 등록된 회계법인에 한해 상장사의 외부감사를 허용하도록 하는 감사인 등록제를 시행한다.¹⁶⁾ 이를 위해 회계법인은 일정한 인력, 물적 설비 및 업무 방법 그리고 심리체계와 보상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많은 국내 회계법인은 사실상 독립채산제로 운영되어 왔으며, 심리실이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등 기본적인 감사품질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하였다. 이에

15) 유한회사는 추가적으로 사원수와 조직변경 기간을 고려하였다.

금융위원회 및 유관기관은 감사인 등록제를 시행하여 기본적인 감사품질을 제고하고자 관련 제도를 국내에 처음으로 도입하였다.

셋째, 감사인 지정제도를 확대 적용하였다. 기존의 외감법에서는 외부 이해관계자를 보호하거나(상장예정기업) 회계 신뢰성이 의심되는 기업(감사인 미선임, 재무상태 악화, 감리기업 등)에 대해서 금융감독원이 감사인을 직접 지정하였다. 하지만 신외감법에서는 회계 신뢰성이 의심되는 기업들(재무제표 작성의무 위반기업, 최대 주주 및 대표이사 교체기업 등)에 대해서 직권 지정 사유를 추가하였다.

그리고 금융위원회를 비롯한 유관기관은 기존의 감사인 자유수입제에서는 기업의 분식회계 관행을 개선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하여 정부의 시장개입을 통해 감사인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감사품질을 제고하고자 주기적 지정제를 도입하였다. 주기적 지정제는 모든 상장사와 소유와 경영이 미분리된 대형 비상장사¹⁷⁾¹⁸⁾를 대상으로 감사인을 6년 연속 자유선임한 이후 3년은 감사인을 지정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감사인 지정제의 운영과 관련된 감사인 지정방식 및 지정점수 산정 등도 개정이 이루어졌다. 다만, 과거 6년 이내에 금융감독원의 감리를 받은 결과 회계처리기준 위반이 없는 기업과 회계 투명성이 양호한 기업은 주기적 지정에서 제외하도록 예외사항을 두었다.

그리고 언론 등에서 회계의혹을 제기한 기업,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의견을 보고한 기업, 횡령·

배임사실의 공시기업 그리고 증권신고서의 잦은 정공시 기업 등 부정적인 회계처리에 대한 의혹이 있는 기업은 감사인 자율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공정한 감사를 통한 회계불신을 해소할 목적으로 자율지정을 신청한 기업은 3년 단위 감사 계약기간 도중에도 감사인을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며, 당해 연도의 감리대상에서 제외하는 혜택을 제공한다(금융감독원, 2017). 이를 통해 규제기관은 기업 스스로 회계의혹을 해소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감리업무의 효율성이 제고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넷째, 사후적발 위주의 현행 감리제도는 투자자 보호 및 회계 투명성 향상에는 효과적이지 않다. 따라서 사전예방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재무제표 심사 제도를 도입하여 특이사항 등 회계오류의 수정을 통해 투자자를 보호하고자 한다.¹⁹⁾

다섯째, 과징금 및 과태료 등의 제재 양정기준이 외감법에 마련되었다. 자본시장법과 공인회계사법에는 감사인에 대한 과징금 제도가 일부 도입되어 있으나 실효성이 거의 없었다(이상복, 2018). 이에 신외감법에서는 회사의 위반행위가 고의 및 중과실인 경우에는 회계처리기준 위반금액의 20%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회사 관계자에게는 회사 부과 과징금의 10%를 부과할 수 있다. 또한 감사인은 감사보수의 5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에 신 외감법에서는 과태료 부과 대상을 신설하고, 기존 부과내용을 일부 조정하였다(정준우, 2018).

회계 투명성을 향상하고 감사품질을 제고하기 위

16) 미국, 일본, 영국 등 주요 선진국은 이미 감사인 등록제를 시행하고 있다.

17) 2017년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기업의 이사회 유효성을 평가한 결과 우리나라는 137개 국가 중 109위를 차지하였다. 더욱이 이사회의 유효성 순위는 계속 떨어지고 있는 추세이다. 또한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이사회 감독의 효과성은 63개 국가 중 최하위인 63위를 차지하였다. 이는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의 지배구조가 취약함을 의미한다.

18) 기존 외감법에서는 소유와 경영이 미분리된 기업(상장기업 지배주주 등이 25% 이상, 비상장기업은 자산규모 천억 이상이며 지배주주 등이 50% 이상)이면서 감사인 선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외부 감사인을 선임한 기업은 직권지정 대상이었다. 하지만 신 외감법에서는 감사인 선임위원회의 기능이 우리나라에서는 유명무실하기 때문에 해당 사유를 직권지정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다만 신 외감법에서는 주기적 지정제를 시행함에 따라 모든 상장법인이 지정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소유와 경영의 미분리 기업도 지정대상에 포함된다. 뿐만 아니라 자산총액이 1천억이면서 소유와 경영이 미분리된 비상장법인과 유한회사를 주기적 지정제에 포함시켜 지정제도의 합리성을 제고하였다.

19) 기존에는 심사감리와 정밀감리가 일원화되었으나, 개정 이후에는 재무제표 심사감리조직과 정밀감리 조직이 이원화된다.

해 개정된 신 외감법을 이해집단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기업은 회계처리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였다. 이를 위해 외부감사 대상을 확대하였으며,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에 대한 보고책임을 강화하고 인증수준이 검토에서 감사로 상향되었다.²⁰⁾ 또한 감사(감사인선임)위원회가 감사인 선임시 사전 평가뿐만 아니라 사후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감사인은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감사인 지정 사유를 확대하고 주기적 지정제를 도입하였다. 그리고 감사품질을 제고하기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춘 감사인에 한해 상장사의 외부감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감사인 등록제를 시행하며, 수주산업에 한정하던 핵심감사제²¹⁾를 모든 산업에서 시행한다.

감독기관은 회계부정 및 감사부실에 대한 감독방식을 선진화하기 위해 사후적발 방식의 감리체계를 사전예방방식의 감리체계로 변경하였다. 또한 기업 및 감사인의 분식회계 및 부정에 대해 과징금 및 과태료 등 제재 수준을 강화하였다. 그리고 감사품질 관리기준을 외감법상 준수 의무로 명시하였다.

4.2 감사인 지정제도 개선방안

정부와 국회는 감사품질을 제고하여 회계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외감법을 전부 개정하였다. 하지만 신 외감법에는 주기적 지정제와 같이 전 세계적으로 처음 시행하는 실험적인 정책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신 외감법의 시행으로 인한 사회적 순기능과 역기능을 사전적으로 파악하기는 어렵다. 이

에 현재 시행된 신 외감법에는 여전히 제도적으로 보완하거나 고려해야 할 부분이 있음을 관련기관도 인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IMD 조사대상 국가 중 회계 투명성(회계감사의 적절성)이 최하위를 기록하는 상황에서 정부 및 국회는 일단 신 외감법을 시행한 후 3년마다 시장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관련 제도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미비점 등을 보완할 예정이다(금융위원회, 2018).

외감법의 가장 큰 개정사항은 감사인 지정제도의 확대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감사인 지정제의 확대 시행에 앞서 사전적으로 고려하거나 검토해 볼 사항들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과거 6년 이내에 증권선물위원회의 감리를 받은 결과, 회계처리기준 위반이 없는 기업은 주기적 지정에서 제외하기로 하였다(외감법 제11조 제3항 제1목). 정부는 감리를 통해 문제가 발견되지 않은 기업은 회계 투명성이 일정 부분 확보되었다고 판단하여 기업에게 이중적인 부담을 줄임과 동시에 주기적 지정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제외시켰다. 하지만 기업의 재무제표 전체를 감리하는 일반감리(수시감리 포함)나 특별감리와 달리 테마감리는 재무제표 전체에 대해서 감리를 실시하지 않고, 해당 회계이슈에 한정하여 감리를 실시하고 있다. 따라서 테마감리 결과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해서 기업 전체 회계 투명성이 확보되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추후에 테마감리 기업의 회계 투명성을 살펴본 후 추가적으로 주기적 지정제 도입이 필요하다면 주기적 지정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20) 감사보고서 작성일 기준으로 전년도 말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의 주권상장법인에 대해서는 2019년 감사보고서부터 적용하며,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의 주권상장법인은 2020년 감사보고서부터, 자산총액 1천억원 이상의 주권상장법인은 2022년 감사보고서부터, 2023년 감사보고서부터는 전체 주권상장법인에 대해서 적용한다.

21) 2016년부터 수주산업에 적용해오고 있는 핵심감사제를 회사 규모를 고려하여 전체 상장기업에 단계적으로 확대 도입할 예정이다. 핵심감사제는 감사인과 경영진간 협의를 통해 유의적인 감사인 주의가 요구되는 주요 감사사항을 결정하고, 이에 대한 감사절차 및 결과 등을 감사보고서에 기재하는 것이다. 핵심감사제의 도입으로 인해 감사인은 핵심 감사사항을 회사와 협의하여 결정하기 때문에 감사인의 협상력이 강화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핵심 감사사항에 대해 감사인이 중점감사를 수행하기 때문에 감사품질이 제고될 것이며, 더욱이 단순 감사의견이 아닌 핵심 감사사항에 대해서 상세한 감사결과를 제공하기 때문에 외부 이해관계자를 보호할 수 있다.

고려할 필요가 있다.

둘째, 과거부터 감사인 직권지정의 면제 사유 중 적절하지 않은 사유는 제외시켜야 된다는 논의가 있었다. 먼저, 시장 활성화를 목적으로 코넥스시장 상장예정 기업은 상장 전 감사인 지정을 제외시키고 있다. 하지만 코넥스시장에 상장을 준비 중인 기업이 소규모이긴 하지만 공모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외부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감사인 직권 지정 사유에 포함시키는 것이 합당하다.

또한 은행, 보험, 금융기관, 투자회사 및 인수목적 기업 등과 같이 금융감독원의 상시감독을 받는 기업에 대해서도 감사인 지정을 제외시키고 있다. 하지만 금융감독원의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은 영업의 건전성에 대한 감독을 수행하는 것이지 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를 전반적으로 수행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금융감독원의 감독을 받는 기업에 대해 감사인 지정을 제외시키는 것 또한 적절치 않다.²²⁾

셋째, 외감법을 개정하면서까지 감사인 지정을 확대한 배경은 최근에 대형 회계법인이 감사한 모뉴엘과 대우조선해양과 같은 대규모 분식회계 사건이 결정적이었다. 따라서 외부감사의 자유수입제의 한계점을 극복하고 전반적인 회계 투명성을 개선하기 위해 감사인 지정제를 확대 시행하게 되었다. 이를 위해 감사인 등록제를 시행하여 감사품질을 관리하고 유지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규제기관이 감사인 등록제에서 요구하고 있는 기준을 대형회계법인은 이미 대부분 충족하고 있어 대형회계법인에게는 감사인 등록제를 통한 감사품질의 제고를 기대하기 힘들다. 즉, 현 감사인 등록제는 중·소형 회계법인의 감사품질을 제고시키기 위한 정책일 뿐 대형 분식회계

사건의 외부감사인이었던 대형회계법인의 감사품질을 제고시키기 위한 정책은 아니다. 따라서 전반적인 감사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소형 회계법인 뿐만 아니라 일정 수준 이상의 조직과 인력을 보유한 중·대형 회계법인도 감사품질을 제고하기 위한 추가적인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

넷째, 신 외감법에서는 감사인의 독립성과 품질관리를 위하여 일정 요건을 갖춰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회계법인에 한해 상장법인을 감사할 수 있으며, 지정감사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많은 중·소형 회계법인은 금융위원회에 등록하기 위해 인적, 물적 설비를 갖춰야 할 뿐만 아니라 품질관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조직을 개편해야 한다. 특히 주 사무소의 등록회계사가 40명 이상이어야 되기 때문에 중·소형 회계법인은 합병을 통해 규모를 확장해야 한다. 감사인 등록제가 2019년 11월부터 시행될 예정인데 직권지정과 주기적 지정에 필요한 등록 가능한 회계법인의 수가 현재까지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²³⁾

하지만 독립채산제의 성격을 가지고 있던 중·소형 회계법인이 합중연회를 통해 2019년 11월까지 회계법인의 규모를 양적으로 확장시키더라도 회계법인마다 사업구조나 운영철학 등 이해관계가 서로 다른 상황에서 질적 요소인 감사품질이 과연 증가할 수 있을지는 의문 사항이다. 2019년 11월까지 감사인 등록을 완료하고 2020년 감사보고서부터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준비 기간은 채 1년이 남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합병을 통해 규모를 갑자기 키운 회계법인에게 일정수준 이상의 품질관리를 요구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따라서 감사인 지정을 확대하여 감사품질을 제고하고자 개정된 신 외감법의 취지를 살린다면, 감사인 등록제를 시행하되 전반적인 회계

22) 신 외감법 개정과 관련되어 국회에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사항들이다.

23) 2018년 3월 말 기준 등록 회계사수 40인을 초과한 회계법인 전체 175개 회계법인 중 28개에 불과하다. 더욱이 등록 회계사수 30명 미만의 회계법인은 144개로 전체 회계법인 중 82%를 차지한다. 상장사를 감사하기 위해서는 회계법인의 등록 회계사수가 최소한 40인 이상이어야 하므로 회계법인간 인수·합병이 필요하다.

법인의 감사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제도적, 감독적 기능의 보완이 필요하다.

다섯째, 신 외감법에서는 감사인 지정을 확대하면서 지정 방식을 변경하였다. 우선 특성을 고려하여 기업과 감사인을 크게 5개의 그룹으로 구분하였고, 자산규모가 큰 기업과 감사인 지정점수가 높은 감사인을 대응하여 지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다. 단, 기업 규모가 작은 하위그룹(예, 기업 '다' 그룹)은 하위 그룹의 감사인(예, 감사인 '다' 그룹)보다 지정점수가 더 높다면 상위 그룹의 감사인(예, 감사인 '가, 나' 그룹)이 우선 지정된다.

이는 감사인 지정점수가 높은 회계법인일수록 감사품질이 높다는 것을 전제한 것인데, 감사인 지정점수 산정시 객관성을 강조하기 위해 회계법인이 수행할 수 있는 외부감사의 여력을 양적으로 지정점수화 하였기 때문에 질적 요소는 거의 반영되지 않았다. 이를 증명하듯이 대형 회계법인이 대체로 감사인 지정점수가 높지만, 모뉴엘이나 대우조선해양과 같은 분식회계 사건에 연루되어 있다. 따라서 감사인 지정점수가 높을수록 감사품질이 높다는 전제를 현재 시행 예정인 감사인 지정방식에 적용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특히 감사인 지정시 상위 그룹의 감사인 지정을 재요청하는 경우 금융위원회는 상위그룹의 감사인을 재지정할 수 있다는 예외조항을 두었다(외감규정 별표 4).²⁴⁾ 하지만 이러한 예외조항은 규모가 큰 회계법인에게 유리하다. 따라서 감사인의 독립성을 위배하거나 운영상 과도하게 요구하는 경우가 아님에도 규모가 큰 대형 회계법인에게 유리한 예외조항은 두는 것은 중·소형 회계법인에게 진입장벽을 더 높이는 것과 같다. 따라서 대형 회계법인에게 유리한 해당 예외조항은 불필요해 보인다. 다만 해외 투자자

의 투자조건이나 주요 거래처의 계약 조건상 글로벌 멤버십이 있는 대형 회계법인에게 감사를 받아야 한다면, 사유별 예외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제도 운영상 필요해 보인다.

여섯째, 감사인 지정제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사항은 감사인의 독립성 확보를 통해 감사품질을 제고시키는 것이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감사품질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감사인의 독립성뿐만 아니라 감사인의 전문성도 같이 고려해야 된다. 하지만 감사인 지정시 활용하고 있는 감사인 점수 산정에는 공인회계사 수, 감사업무의 매출액, 품질관리 업무 담당자의 비중, 손해배상 능력 및 전년도 감사대상 상장사 수 등 정량적 지표로만 구성되어 있다. 물론 이러한 정량적 지표로 산출된 감사인 점수를 바탕으로 감사인을 지정하게 되면 논쟁의 소지가 없다는 장점은 있다. 하지만 신 외감법의 개정 취지인 감사품질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감사인 지정시 감사인의 산업 전문성 같은 정성적 지표도 같이 고려해야 된다. 정성적 지표는 이해관계가 첨예한 집단 간 논쟁의 소지가 있지만 신 외감법의 개정 취지를 고려한다면 정성적 지표의 적용 또한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일곱째, 한국공인회계사회로부터 조치를 받은 회계법인에게는 지정제외점수를 부과하고 있는데, 지정제외점수 30점당 1개 기업의 감사인 지정에서 제외시키고 있다(외감규정 별표 4). 감사인의 독립성 측면만을 고려한다면 문제될 것이 없지만, 궁극적으로 감사품질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지정제외점수를 엄격히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 규정에서는 감사인 지정제외점수가 높으면 총 지정기업수에서는 불이익을 받더라도 여전히 감사에 참여하게 된다. 따라서 단순히 특정 조건 없이 1개 기업에 대한 지

24) 이미 외감법 제11조 제4항과 외감법 시행령 제17조 제7항에 회사 또는 지정감사인은 외국 투자자가 출자한 회사로서 특정 감사인을 한정하는 등 특정 사유가 있으면 증권선물위원회에 감사인의 재지정을 요청할 수 있는 예외조항을 두고 있다.

정을 제외시킬 것이 아니라 조치를 받게 된 관련 기업은 물론 관련 산업에서도 감사인 지정을 제외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특정 지정제외점수 이상인 감사인은 당해 연도 감사인 지정에서 완전히 제외시키는 것이 감사품질을 제고시키고자 개정된 신 외감법의 취지에 더욱 부합할 것이다.

앞서 살펴본 사항들에 비해 중요성이 크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감사인 지정과 관련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는 사항들이 있다.

첫째, 직전 사업연도를 포함하여 과거 3년간 최대 주주의 변경이 2회 이상 발생하거나 대표이사의 교체가 3회 이상 발생한 주권상장법인은 감사인 직권 지정 사유로 신설되었다(외감법 제11조 제1항 제11목). 최대 주주 및 대표이사를 자주 변경하거나 교체한 주권상장법인을 감사인 지정 사유로 선정한 것에 대해서는 대부분 동의하고 있다. 하지만 잦은 변경 및 교체에 대한 기준을 선정한 근거가 무엇인지가 구체적으로 논의되어 있지 않다. 적어도 잠재적 지정대상인 주권상장법인에게는 최근 3년간 최대 주주의 변경은 2회로 제한하고, 대표이사의 교체는 3회로 제한한 합리적 근거자료를 충분히 제공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와 관련하여 설명회나 관련 법령 보도자료 등에 근거자료나 배경이 명확히 제시되고 있지 않다. 근거자료 및 개정 배경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 가능하도록 관련 기업이나 정보이용자들에게 제공하는 것도 법령을 시행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둘째, 감사인 등록제를 동시에 시행하다 보니 금융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 등록 가능한 회계법인의 수를 정확히 예측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주기적 지정제의 효율적인 정착을 위해 금융위원회에서 감사인 지정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

도록 일정 부분 여지를 남겨두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상장사의 1/9인 220개를 매년 자산총계 순으로 지정할 계획이다.²⁵⁾ 또한 당해 연도 지정대상 기업이었으나 지정되지 않은 기업은 차기 년도에 감사인을 우선적으로 지정하도록 하였다.

하지만 주기적 지정제에는 상장사뿐만 아니라 소유와 경영이 미분리된 대형 비상장법인과 유한회사도 포함된다. 따라서 이들 대상 기업에 대해서도 상장사와 마찬가지로 주기적 지정제의 종합적인 운영 계획을 공개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시행까지 약 1년 정도 남은 상황에서 여전히 이들 기업에 대한 주기적 지정제의 운영계획에 대해서는 관련 정보가 전무하다. 기업 규모나 형식에 따라 단계적으로 운영 계획을 공개할 수도 있으나 신 외감법이 기업에 미치는 효과가 매우 큰 만큼 주기적 지정제 대상기업 전체에 대해서 운영계획을 공개하는 것이 빠른 시일 내에 선행되어야 한다.

셋째, 감사인 점수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감사인의 경력점수를 수치화하여 포함하고 있다. 이는 감사인의 경력이 높을수록 전문적인 감사업무가 수행되어 감사품질이 향상될 것이라는 전제하에 만들어진 규정이다.²⁶⁾ 하지만 실제로 경력이 높은 감사인이 등록은 되어 있지만, 감사업무에 투입되지 않는다면 해당 규정은 의미가 없다. 따라서 사후적으로 일정 경력을 가진 감사인이 감사업무를 수행하였는지 여부를 차기 감사인 지정점수 및 지정제외점수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넷째, 신 외감법에서는 외부감사인이 회계감사기준을 준수하고 감사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일정한 감사시간을 보장하려고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한국공인회계사회(한공회)에 표준감사시간을 마련하도록 위탁하였으며(외감법 제16조의 2, 시행령 제23

25) 2017년 기준 상장사는 1,959개이다.

26) 물론 감사인의 경력과 전문성이 비례하지 않는다는 반론도 있다. 하지만 대체로 감사인의 경력이 많을수록 경험이 많고 기업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도가 높아 전문적인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의견이 다수이다.

조), 2019년 2월 한공회가 최종 확정했다.²⁷⁾

감사보수는 감사시간에 시간당 감사보수인 임률을 곱해 책정한다. 표준감사시간은 직전연도 감사시간 대비 30%(자산규모 2조원 이상은 5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상한제를 도입하였지만, 최근 회계법인은 시간당 보수인 임률을 인상하고자 한다. 더욱이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에도 추가비용이 지출됨에 따라 기업이 부담해야 할 감사보수는 훨씬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²⁸⁾ 하지만 회계업계에서는 감사보수를 단순히 비용측면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신 외감법을 시행하여 회계투명성이 제고되면 기업가치가 상승하기 때문에 지출된 비용의 증가분은 충분히 상쇄할 수 있을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재무구조가 열악한 중·소형 기업에게는 감사보수의 급격한 증가가 기업운영에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이다.

금융당국은 표준감사시간을 이용하여 과도한 보수를 요구하는 회계법인을 제재하겠다는 방안을 마련하였지만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지거나 판단 기준을 제시하지는 않고 있다. 또한 과도한 감사보수를 요구하는 경우 감사인 재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는 예외조항이 있지만(외감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 외감규정 제14조 제7항), 지정기업에 대해서도 과도한 감사보수요구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이 가능한 가이드라인 역시 마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객관적인 판단을 위해서라도 감사보수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하다.

V. 결론

우리나라는 회계 투명성을 향상시키고 국제적 신뢰도를 제고하여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해 2011년 국제회계기준(IFRS)을 전면 도입하였다(최관 외, 2013). 하지만 IFRS를 도입한 이후에도 POSCO, KT, 대우조선해양 등 회계 투명성이 상대적으로 높을 것이라 예상하였던 대기업들의 대규모 분식회계사건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 더욱이 IMD에서 발표한 우리나라 회계 투명성 순위는 점차 낮아지고 있으며, 2017년 회계감사의 적절성은 조사대상 국가 중 최하위를 보고하였다. 이에 금융위원회를 바탕으로 유관기관은 감사품질을 제고하여 전반적인 회계 투명성과 신뢰성을 향상시키고자 신 외감법을 개정하였다.

신 외감법은 외감대상의 확대, 감사인 지정제도의 확대적용, 감사인 등록제 시행, 감리제도의 개선, 그리고 제재 양정기준 마련 등 5개 분야에서 개정이 이루어졌다. 특히 감사인의 독립성과 외부감사의 신뢰성을 높여 이해관계자를 보호하기 위해 규제기관이 외부 감사인을 지정하는 감사인 지정제도를 확대한 것이 가장 큰 개정사항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감사인 지정제도에 대해서 정리하고, 감사인 지정제도와 관련된 사항들에 대해서 주요 논점별로 살펴보고 있다.

신 외감법에서 감사인 지정제와 관련된 내용을 살

27) 표준감사시간은 상장여부, 회사의 규모, 사업 복잡성, 감사위원회 등 지배구조의 역할수준,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구성 및 감사인 특성 등을 고려하여 11개 그룹으로 나눠 차등적으로 적용된다. 표준감사시간은 그룹별 표준감사시간표 등에 기초한 산정결과에 개별 감사팀의 '숙련도 조정계수(기준숙련도 / 개별감사팀단위 감사인숙련도)'를 곱해 산정된다. 표준감사시간은 직전연도 감사시간 대비 130%(자산규모 2조원 이상은 150%)을 초과하지 않도록 상승률 상한제도를 적용하였다.

28) 회계법인은 최저임금의 인상 및 업무의 복잡성 등을 이유로 시간당 감사보수인 임률을 6~7만원 수준에서 8~9만원 수준으로 인상하고자 한다. 특히 IFRS 도입으로 인해 업무가 복잡하고 감독 및 감리기능이 강화되었음에도 임률이 오히려 낮아져 이를 다시 기존 수준으로 회복하는 과정일 뿐 임률을 인상하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에 반해 경제단체는 영업이익 대비 감사보수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중·소형기업에게는 감사보수의 급격한 증가가 직접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회계 정보의 신뢰성 및 투명성이 요구되는 기업에 대해서 감사인 직권지정 사유를 추가하였다. 둘째, 6년 자유선임 후 3년 감사인을 지정하는 주기적 지정제를 도입하였다. 셋째, 회계처리에 대한 의혹이 있거나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 의견 보고기업, 횡령 및 배임공시 기업은 감사인 자율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감사인 직권지정제도의 확대 및 주기적 지정제의 시행에 앞서 사전적으로 검토해 볼 사항들이 있다. 첫째, 과거 6년 이내에 증권선물위원회의 감리를 받은 결과, 회계처리기준 위반이 없는 기업은 주기적 지정에서 제외하기로 하였다. 하지만 일반감리나 특별감리와 달리 테마감리는 해당 회계이슈에 대한 감리를 시행하는 것으로 테마감리 결과 특정 회계처리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해서 기업의 회계 투명성이 확보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테마감리 기업은 주기적 지정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둘째, 외부 이해관계자를 보호하기 위해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의 상장예정기업은 감사인을 지정받는다. 하지만 시장 활성화를 목적으로 코넥스시장의 상장예정기업은 감사인 직권지정에서 제외시키고 있다. 그러나 감사품질을 제고하고 외부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규모가 작고 이해관계자가 적다고 할지라도 코넥스시장의 상장예정기업도 감사인 지정을 받는 것이 합당하다.

셋째, 금융감독원의 상시감독을 받는 금융기관에 대해서도 감사인 지정을 제외시키고 있다. 하지만 금융감독원은 금융기관의 영업 건전성에 대해서 감독을 수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엄밀히 말해 기업 전반에 걸친 회계처리에 대한 감독을 수행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감사품질을 제고하고 회계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개정된 신 외감법의 개정 취지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도 감사인 지정대상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넷째, 감사인의 독립성과 품질관리를 위하여 일정 요건을 갖춘 회계법인에 한해 상장법인의 감사를 수행할 수 있는 감사인 등록제를 도입하였다. 이로 인해 규제기관은 소형 회계법인을 대형화함으로써 일정 수준 이상의 품질관리가 이루어져 궁극적으로 감사품질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회계법인마다 사업구조나 운영철학 등 이해관계가 다른 상황에서 양적으로 회계법인의 규모를 키우는 것이 감사품질을 제고할 수 있는지는 여전히 미지수이다. 따라서 외형적 확대뿐만 아니라 감사품질을 제고시키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또한 감사인 등록제는 대부분 중·소형 회계법인의 감사품질을 제고시키기 위한 정책이지 KT나 대우조선해양 등 대규모 분식회계 사건의 외부감사를 맡았던 대형회계법인의 감사품질을 제고시키기 위한 정책은 아니다. 따라서 대형회계법인의 감사품질을 제고시키기 위한 추가적인 정책마련도 필요하다.

본 연구는 신 외감법의 감사인 지정제도와 관련한 사항들을 살펴보고, 시행에 앞서 사전적으로 살펴볼 사항들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특히 기존의 감사인 지정제도 선행연구들은 실증분석을 통해 감사인지정제도의 유용성을 살펴보거나 IFRS 도입에 따른 감사인 지정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하지만 본 연구는 신 외감법에서의 감사인 지정제도를 정리하고, 개선방안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외부 이해관계자들에게 감사인 지정제도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사료되며, 향후 정책기관이 관련 제도를 개정할 때 참고자료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는 정책연구로서 신 외감법의 감사인 지정제도와 관련된 주요논점별로 개선방안을 논의하였다. 따라서 향후 실증자료를 이용하여 본 연구에서 논의하고 있는 신 외감법의 효과성 및 유용성을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REFERENCES

- Ahn, Y. K., and J. K. Yi(2004), "The effect of auditor assignment by securities and futures commission on earnings management," *Korean Accounting Review*, 29(1), 89-115. [printed in Korean]
- Certified Accountants Law(2018, Dec 31) [printed in Korean]
- Choi, A. R., C. H. Sonu, and J. H. Choi(2014), "Mandatory audit firm rotation: Understanding of the current status, literature review on the findings in prior studies, and policy suggestions," *Korean Accounting Journal*, 23(6), 37-87. [printed in Korean]
- Choi, K., J. I. Park, and S. H. Choi(2013), "The effect of IFRS adoption on accounting quality and economic consequences: A literature review and suggestions for future research," *Korean Accounting Review*, 38(2), 525-591. [printed in Korean]
- Choi, S. H., I. S. Kim, and K. Choi(2015), "The effect of mandatory auditor designation regulation on earnings management in IPO," *Korea Accounting Review*, 40(6), 283-321. [printed in Korean]
- Chung. J. W(2018), "A critical review of major issues of the Act on External Audit of stock companies, etc. amended in 2017," *Hanyang Law Review*, 29(3), 229-257. [printed in Korean]
- DeAngelo, L. E(1981), "Auditor size and audit quality," *Journal of Accounting and Economics*, 3(3), 183-199.
- Defend, M., and J. Zhang(2014), "A review of archival auditing research," *Journal of Accounting and Economics*, 58(2-3), 275-326.
-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f External Audit of Corporation. (2018, Oct 30) [printed in Korean]
- Financial Service Commission(2017), "*Final decide 'Comprehensive plan to enhance accounting reliability and transparency.'*," Apr 18, 2017. [printed in Korean]
- Financial Service Commission(2018),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f External Audit of Corporation' regulation impact analysis.*," Apr 19, 2018. [printed in Korean]
- Financial Service Commission(2019), "*FSC voted on registration requirements for external auditors of listed firms.*," Jan 30, 2019. [printed in Korean]
-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2017), "*Guidance on supervision and external audit regulation changed and implemented recently.*," Mar 15, 2017. [printed in Korean]
-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2018), "*2017 External audit firms and auditor designation status.*," Jan 24, 2018. [printed in Korean]
- Ha, S. G., Y. E. Cho, and S. W. Park(2015), "The relationship between auditor designation and conservatism," *Korean Accounting Journal*, 24(2), 117-151. [printed in Korean]
- Hwang, I. T., and S. M. Kang(2006), "Do auditor-assigned firms pay appropriate audit fees?," *Korean Accounting Journal*, 15(special issue), 91-122. [printed in Korean]
- Hwang, I. T., and S. M. Kang(2014), "The Improvement of Auditor Designation System with IFRS Adoption," *Accounting Information Review*, 32(2), 251-280. [printed in Korean]
- Hwang, I. T., S. M. Kang, and S. J. Kim(2013), "New ISA 600 and auditor designation," *Korean Accounting Journal*, 22(5), 1-27. [printed in Korean]
- Kang, M. J., and M. G. Lee(2018), "The impact of auditor designation on cost of debt," *Ac-*

- counting Information Review*, 36(2), 271-297. [printed in Korean]
- Kang, S. M., and I. T. Hwang(2007), "Auditor designation and changes in discretionary accruals: Roles of the corporation and auditor," *Korean Accounting Review*, 32(4), 115-150. [printed in Korean]
- Kim, E., and Y. J. Shin(2010), "The effect of auditor designation and non-audit services on book-tax differences," *Accounting Information Review*, 28(3), 289-315. [printed in Korean]
- Kim, J. B., and C. H. Yi(2009), "Does Auditor designation by the regulatory authority improve audit quality? Evidence from Korea," *Journal of Accounting and Public Policy*, 28(3), 207-230.
- Kim, J. H., and J. W. Jeong(2009), "Regulation effect of auditor assignment system on initial public offering company," *Daehan Journal of Business*, 22(2), 687-710. [printed in Korean]
- Kim, J. O(2014), "Auditor designated firms and value relevance of accounting information," *Journal of Taxation and Accounting*, 15(3), 209-233. [printed in Korean]
- Kwon, S. Y., H. S. Yi, and J. H. Choi(2013), "Critical review on the determinants and economic consequences of audit quality," *Korean Accounting Review*, 38(2), 447-523. [printed in Korean]
- Kwon, S. Y., J. H. Rho, and G. S. Bae(2004), "The effect of auditor designation on discretionary accruals: Auditor rotation and retention requirements in the Korean audit service market," *Korea Accounting Review*, 29(4), 191-218. [printed in Korean]
- Lee, S. Y(2009), "Different reasons of mandatory auditor designation and market responses to them," *Journal of Taxation and Accounting*, 10(2), 171-198. [printed in Korean]
- Lee, S. Y., H. R. Jung, and B. G. Roh(2009), "Market responses to mandatory auditor designation," *Korean Accounting Review*, 34(1), 207-240. [printed in Korean]
- Lee, S. P(2018), "Sweeping changes and further tasks of auditor responsibility related provisions under amendments to the Act on External Audit," *Law and Corporate Review*, 8(1), 133-160. [printed in Korean]
- Louis Vuitton, Gucci, Apple, MS are externally audited in Korea(2017, Oct 9), *Yonhap News*. [printed in Korean]
- Park, H. S(1996), "The effects of the mandatory auditor designation on the manger's behavior of earnings management," *Korean Accounting Review*, 21(3), 33-63. [printed in Korean]
- Park, J. H., and J. H. Kim(2007), "Value relevance of statutory auditors and accounting information," *Accounting Information Review*, 25(4), 135-154. [printed in Korean]
- Regulations on External Audit and Accounting (2018, Nov 1) [printed in Korean]
- Shin, Y. J., and E. Kim(2010), "The effects of auditor designation and audit hours on audit fees : Focusing on endogeneity of audit fees and audit hours," *Korea International Accounting Review*, 29, 177-208. [printed in Korean]
- The External Audit Law(2018, Mar 20) [printed in Korean]
- The Korean Institute of Certified Public Accountants (2019), "*Standard audit hour*," Feb 13, 2019. [printed in Korean]

국내참고문헌

- 강민정, 이명건(2018), "감사인지정이 타인자본비용에 미치는 영향," *회계정보연구*, 36(2), 271-297.

- 강선민, 황인태(2007), "감사인 지정과 재량적 발생액의 변화: 기업과 감사인의 역할," **회계학연구**, 32(4), 115-150.
- 공인회계사법, 2018.12.31. 개정.
- 권수영, 노준화, 배길수(2004), "감사인 지정이 감사인의 독립성을 제고하는가? 감사인 순환과 감사인 유지를 중심으로," **회계학연구**, 29(4), 191-218.
- 권수영, 이한상, 최중학(2013), "감사품질의 결정요인과 경제적 효과에 대한 비판적 검토," **회계학연구**, 38(2), 447-523.
- 금융감독원(2017), "**최근 변경·시행된 감리 및 외부감사 제도 유의사항 안내**," 2017년 3월 15일자.
- 금융감독원(2018), "**2017년 외부감사대상 회사 및 감사인 지정현황**," 2018년 1월 24일자.
- 금융위원회(2017), "**「회계 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한 종합대책」 최종확정**," 2017년 4월 18일자.
- 금융위원회(2018),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규제영향분석서**," 2018년 4월 19일자.
- 금융위원회(2019), "**금융위원회, 상장회사 외부감사인 등록요건 의결**," 2019년 1월 30일자.
- 김은, 신용준(2010), "감사인 지정과 비감사서비스가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에 미치는 영향," **회계정보연구**, 28(3), 289-315.
- 김정옥(2014), "감사인 지정기업 회계정보의 가치관련성," **세무와 회계저널**, 15(3), 209-233.
- 김진희, 정재욱(2009), "상장예정기업에 대한 감사인 지정제도의 규제효과," **대한경영학회지**, 22(2), 687-710.
- 박재환, 김진희(2007), "감사인 지정기업과 회계정보의 가치관련성," **회계정보연구**, 25(4), 135-154.
- 박한순(1996), "감사인 지정이 경영자의 이익조절행위에 미치는 영향," **회계학연구**, 21(3), 33-63.
- 신용준, 김은(2010), "감사인 지정과 감사시간이 감사보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감사보수와 감사시간의 내생성 검증을 중심으로," **국제회계연구**, 29, 177-208.
- 안영균, 이재경(2004), "감사인 지정이 기업의 이익조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회계학연구**, 29(1), 89-115.
- 연합뉴스(2017), "루이비통·구찌·애플·MS도 국내서 감사받는다," 2017년 10월 9일자.
-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외감규정), 2018.11.1. 개정.
- 이상복(2018), "개정 외부감사법상 감사인책임 관련제도의 주요내용과 과제," **법과기업연구**, 8(1), 133-160.
- 이세용(2009), "감사인 지정 사유의 차이와 시장의 차별적 반응," **세무와 회계저널**, 10(2), 171-198.
- 이세용, 정형록, 노박은(2009), "감사인 지정에 대한 시장 반응," **회계학연구**, 34(1), 207-240.
- 정준우(2018), "2017년 개정 외부감사법의 주요쟁점 검토," **한양법학**, 29(3), 229-257.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 2018.03.20. 개정.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외감법 시행령). 2018.10.30. 개정.
- 최관, 박종일, 최성호(2013), "IFRS 도입이 회계의 질에 미친 영향과 경제적 효과: 문헌검토와 미래연구에 대한 제안," **회계학연구**, 38(2), 525-591.
- 최성호, 김인숙, 최 판(2015), "감사인 지정제도가 신규상장기업의 이익조정에 미치는 영향," **회계학연구**, 40(6), 283-321.
- 최아름, 선우혜정, 최중학(2014), "감사법인 강제교체제도 도입을 둘러싼 논란: 현황과약 및 선행연구의 발견에 대한 문헌검토와 정책제언," **회계저널**, 23(6), 37-87.
- 하순금, 조용연, 박성환(2015), "감사인 지정여부와 보수주의의 관련성," **회계저널**, 24(2), 117-151.
- 한국공인회계사회(2019), "**표준감사시간**," 2019년 2월 13일자.
- 황인태, 강선민(2006), "지정감사인의 감사보수는 과연 적정인가?," **회계저널**, 15(특별호), 91-122.
- 황인태, 강선민(2014), "지정기업 실증분석을 통한 감사인 지정제도 개선방안: IFRS 도입 환경을 중심으로," **회계정보연구**, 32(2), 251-280.
- 황인태, 강선민, 김순희(2013), "New ISA 600과 감사인 지정제도," **회계저널**, 22(5), 1-27.

A Study on Improvement of Mandatory Auditor Designation Regulation

Sung-Ho Choi* · Kyoung-Ran Park**

Abstract

Recently, congress amended the Act on External Audit of Stock Companies to improve accounting transparency and reliability in firms. In particular, mandatory auditor designation have been greatly expanded through this revision. Therefore, this study systematically summarized and discussed the mandatory auditor designation regulation.

First as a result of the audit review of the FSS within the past six years, firms with no accounting standard violations are excluded from the periodic designation. However, the theme audit review of FFS does not audit review on financial statements but an audit review on specific accounting issues. Therefore, the theme audit review firms should be included in the periodic designation.

Second, to promote the KONEX, pre-IPO firms were excluded from designation of auditor. Also, since financial institutions are supervised by the FSS, they were excluded from designation of auditor. However, to protect outside investors, firms that are pre-IPO on the KOSPI and KOSDAQ are designated auditor. In addition, the FSS oversees the soundness of operations for financial institutions, but FSS does not oversee the accounting for financial institutions. Thus, it is necessary to exclude the auditor designation exception for these reasons.

Third, due to the introduction of the auditor registration system, many small accounting firms are expected to make changes such as organizational changes and mergers to meet the registration requirements. However, it is not known whether audit quality will improve in this environment. Therefore, considering the quality control level of the accounting firms, it is necessary to implement the auditor registration system step by step. Also, the policy to improve audit quality of medium and large accounting firms is missing from amendment of the External Auditing Law.

Key Words: The External Audit Law, mandatory auditor designation, direct designation, periodic designation

* Assistant Professor, College of Business, Chosun University, First author

** Ph.D. Candidate, College of Law, Chonnam National University, Corresponding author